

강릉원주대학교와 한국식품연구원간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협약서

강릉원주대학교(이하 “강릉원주대” 라 한다)와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이라 한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수 기술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 하고자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 내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 과정(이하 “협동과정”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강릉원주대와 식품연(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간 교육인력, 시설, 실험실습기자재를 공동으로 연계 활용하여 산업체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할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운영원칙) ①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릉원주대 대학원 내에 별도로 협동과정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기로 한다.

② 협동과정의 학사운영과 학사운영은 양 기관이 협동하여 운영하되, 원칙적으로 강릉원주대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③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에 의하여 대학원에 학·연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④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정원) 협동과정 내에 설치되는 전공분야는 식품에 관련된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학과를 포함하며, 해당 과정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원주대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학) 협동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원칙적으로 강릉원주대 학칙 및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원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협동과정의 교과과정 중에서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원에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습 및 연구를 식품연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에 필요한 연구실험은 식품연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출강 및 논문지도) ① 대학원장은 식품연의 선임 또는 책임연구원에게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 지도는 강릉원주대의 해당 분야 교수와 식품연의 선임 또는 책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학위논문) ① 학위논문의 제출절차는 강릉원주대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양 기관의 공동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석사는 3인 이상, 박사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강릉원주대의 교수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학위수여)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청구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강릉원주대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9조(교원위촉) ① 협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식품연의 선임 및 책임연구원을 강릉원주대의 비전임 교원으로, 강릉원주대의 교원을 식품연의 비전임 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비전임 교원은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릉원주대의 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료 및 강의료 등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술정보 교류 및 자문)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 교류에 적극 협력하며, 상대 기관의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한다.

제11조(기타)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효력발생) 본 약정은 양 기관장이 공동 노력으로 이 과정의 설치가 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5월 14일

강릉원주대학교

총 장 반 선 섭



한국식품연구원

원 장 박 동 준

